

유럽통합의 이념과 유럽공동체법의 전개에 관한 연구

김우성
법학부

<요 약>

통합이란 개념은 독립의 사회단위관계의 속성이 각각의 독립성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형태로 변화하여 보다 커다란 집합체의 일부분이 되는 과정을 함축한다. 이 개념은 다소간 주권독립성을 가지는 정치단위간에서의 변화의 분석에 사용된다. 국제 관계론에 있어서는 이 개념은 특히 국제관계가 누적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중앙집권적 권력기관을 수용함에 이르는 과정의 분석에 한정된다.

특히 지역적 통합 개념은 전 세계적인 통합에 이르지 않는 단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한정된 둘 내지 그 이상의 국가 간에서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 유럽공동체는 지역적 통합의 특수한 실험이고 고도의 경제적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의 달성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법 및 국내법의 양 특성을 통합이라는 법 체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A Study on the Ideology of European Union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European Community Law

Kim Woo Sung
Dept. of Law

<Abstract>

The term "integration" refers to a process whereby the quality of relations among autonomous social units changes in such a way as to erode the autonomy of each and make it part of a larger aggregate.

The term is reserved for the analysis of such changes among more or less

“sovereign” political units, and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term is confined to the analysis of cumulatively changing relations among states, resulting in their acceptance of some new central authority.

Specially, regional integration refers to that process among two or more states on a geographically confined scale at level below that of global integration. The European Communities are a unique experiment in regional integration, being designed to achieve a high degree of economic and ultimately, political integration, and having created a body of law which combines characteristics of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1. 서론

통합이란 개념은 독립의 사회단위관계의 속성이 각각의 독립성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형태로 변화하여 보다 커다란 집합체의 일부분이 되는 과정을 함축한다. 이 개념은 다소간 주권독립성을 가지는 정치단위관계에서의 변화의 분석에 사용된다. 국제관계론에 있어서는 이 개념은 특히 국가 간 관계가 누적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중앙집권적 권력기관을 수용함에 이르는 과정의 분석에 한정된다.

특히, 지역적 통합개념은 전 세계적인 통합에 이르지 않는 단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한정된 둘 내지 그 이상의 국가간에서의 통합 과정을 의미한다. 유럽공동체(EC)¹⁾는 지역적 통합의 특수한 실험이고 고도의 경제적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의 달성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법 및 국내법의 양 특성을 통합하는 법체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유럽통합이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결합, 통합 나아가서는 연방을 형성하는 과정 및 목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전통적인 정부간 협력으로부터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에까지 미치는 통합에의 폭넓은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의 모든 것을 포섭하기에 충분한 일반적으로 막연한 편리한 말이기도 하다. 서유럽에 있어서의 기구적 구조는 정부에 의한 활동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결정과 제도가 복합된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럽통합을 특성의 제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결부시켜서 정의의 내리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C)는 통합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유럽의 여러 제도 보다도 많은 주목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그의 특별한 초국가적 구조는 가끔 유럽 통합기구의 유일한 모델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유럽공동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보다 광범한 구성원 구성을 가지는 다른 많은 유럽기구도 또한 유럽 통합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1) European Communities (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 유럽경제공동체(EEC 1958)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1958)의 3 공동체의 총칭. 1967년에 단일 이사회 및 단일 위원회를 설립한 후 일반적으로 EC라는 칭호가 사용되어왔다. 원 가맹국은 프랑스, 서독(현 독일), 이태리, 벨지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의 6개국 1973년 1월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0년 1월에 그리스, 1986년 1월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맹하여 구성국가는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C가 7년에 걸쳐서 추진하여 왔던 시장통합은 예정대로 1992년 말에 거의 완성, 1993년 1월부터 사람, 물자, 자본,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총인구 3억5000만, 국내총생산(GDP)의 합계 6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무역단위가 탄생하였다. 1993년 11월 1일 Maastricht 조약의 발표에 의하여 유럽통합(EU)으로 명칭 변경.

것이다.

서유럽 여러 국가 간 통합의 현저한 진전은 그들 여러 국가가 공통의 문화, 전통 및 동질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가지는 것으로 촉진되었다. 통합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10년 간에 그들 여러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부흥의 사업이 개개의 국가의 능력을 초월하는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 국가가 널리 공유함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 되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이 통합과정은 서유럽에 한정되었다. 동유럽은 그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기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의 다른 집단을 형성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통합을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합과정을 형성하는 유럽의 여러 제도 각각의 역사,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서의 구체적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추구된 여러 가지의 제도적 접근방법의 분석과 이 통합과정의 성과의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유럽통합의 개념과 변천(유럽통합법 형성의 전제로서의 공통의 법문화)

유럽 여러 국가의 보다 긴밀한 연합을 촉진하는 정치 집단의 비공식적 협력조직으로서 1948에 설립된 유럽운동(European Movemen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반적 권한을 갖는 유럽 여러 나라의 연방체제를 설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전후의 수년간에 걸친 유럽 통합의 초기에 있어서는 경제, 방위, 외교정책이라는 각각의 분야에 다른 제도를 설립하는 방법이 추구되고 이들 분야에 따라 다른 법적 성격, 다른 성원 구성을 갖는 다른 제도조직이 설립되었다. 1949년에 설립된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는 원래 방위문제는 제외하고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법률 및 행정상의 문제들에 있어서 협정 및 공동 행동에 의하여 구성 국가 간에 보다 광범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²⁾라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 주요한 유럽 기구로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이들 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통합의 촉진에는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단지 인권보호의 분야에 있어서만 통일적 기준³⁾을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통일적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경제 방위 및 외교 정책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구조를 갖는 다른 유럽기구, 특히 유럽공동체(EC)가 유럽심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통합과정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유럽심의회는 이들 모든 다른 전문적인 유럽기구에 대해서 적어도 조정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안된다. 유럽심의회는 노력의 결과, 특히 국가 간의 여행, 도로교통, 통신, 통상제도의 자유화, 법적 제제도의 상호승인, 공동화 촉진⁴⁾, 사회복지 수준의 조화⁵⁾ 및 가맹국간 분쟁 해결⁶⁾을 목적으로 하는 100 이상의 유럽제조약과 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조약과 협정은 통합화 촉진에 기여하는 법적 기초

2) 유럽 심의회규정(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제 1조.

3)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상사중재제도, 판결 및 행정법령의 상호승인 등

5) 1961년의 유럽사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 of 1961).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등.

6) 1957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조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of 1957).

가 되었다. 단지 유감스럽게도 이들 조약과 협정들 중 약간은 비준 절차가 까다로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 가맹국을 구속할 수는 없었다⁷⁾.

유럽통합을 향한 국가간의 구체적 제일보로는 1951년 4월에 Belgium, France, West Germany,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의 유럽 6 개국간에서 서명되어 다음해 7월 Luxembourg에서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이다. 이것은 1950년 5월 9일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기간에 걸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의 석탄과 철강의 자원을 공동의 기관의 공동관리로 할 것을 제창한 프랑스의 Schuman의상의 선언에 응답한 것이었다. Schuman선언의 원형은 「OEEC와 유럽심의회는 단순한 정부간 협력의 영역을 벗어나없이 참다운 지역통합은 한정된 분야일지라도 국가 주권에 대하여 대담한 도전 없이는 달성될 수가 없고, 「유럽은 하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업적의 축적에 의하여 건설되어진다」라고 한 유럽통합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국가기획원 총재 Monnet, gean 의 발언에 있다. ECSC는 「가맹국의 일반경제와 조화시켜서 석탄과 철강을 위한 공동시장을 창설하고, 참가국의 경제의 확대 고용의 개발과 생활수준의 개선에 공헌하고 가능한 최고수준의 생산성으로 생산의 가장 합리적인 분배가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창설하고, 타방으로는 고용의 계속을 확보하여, 가맹국의 경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고 간단없는 혼란의 발생을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ECSC에는 초 국가기구로서 가맹국 정부로부터 독립한 구성체로서 9인으로 구성되는 최고기관(High Authority)이 설치되어 조약의 시행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리하여 석탄과 철강이라는 국가에 있어서의 기본물질의 공동관리를 지향하였던 ECSC는 1952년 7월에 정식 발족하였지만 동시에 ECSC는 독-불간에 역사적 적대관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유럽통합을 향한 하나의 초석을 놓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패전국 독일은 포츠담선언에서 통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1949년 소련과 미, 영, 불의 점령지구로 분열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분열 후 눈부신 부흥을 이룩한 서독은 유럽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소련에의 대항상 미국과 서구제국은 서독 재 군비를 포함한 서방측의 군비강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프랑스의 Plevin 수상은 유럽군 설치와 유럽방위공동체에 관한 구상을 1950년에 발표, 초 국가적 지역방위조직의 창설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ECSC에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방위조약에의 참가를 주저하여 결국 ECSC가맹 6개국간에서 유럽방위공동체(EDC)창설에 관한 조약을 기초하고 동 조약은 1952년 5월에 서명되었다. 결국 유럽방위공동체조약은 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만 비준하였다. 그러나 조약을 제창한 당사자인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1954년 8월에 프랑스 국민의회가 동 조약의 비준심의의 종결을 결정함으로써 유럽방위공동체계획은 무산되어버렸다. EDC구상이 붕괴된 후 영국의 Eden 수상의 노력에 의하여 서독의 재 군비와 서구의 군비강화의 문제는 일단 수습이 되었다. 즉 미국, 영국 캐나다와 서구 6개국은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영국이 참여하고 있는 서구 5개국동맹에 서독과 이태리를 추가한 서구 7개국에 의하여 서구동맹의 결성에 합의, 1954년 10월의 파리에서의 서명을 거쳐서 1955년 5월 서구동맹은 발족하였다. 이것은 유럽방위공동체와 같이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직은 아니었지만. 기능적으로는 폭넓은 활동의 잠재성을 갖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런던에서의 회의에서는 서독의 NATO 참가까지도 아울러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7) 유럽 심의회가 정기적으로 발해하는 서명국 및 비준국 일람 참조.

이리하여 ECSC는 거대한 미·소 양국사이에 놓여진 유럽이 독자적인 경제력을 회복하여 확보하는 움직임인 동시에 부흥하는 독일의 강력한 경제력을 유럽화 함으로써 프랑스가 자국 및 유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동일한 일이 군사면에 있어서도 일어났다. EDC는 발족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미·소의 강대한 군사력 사이에 놓여진 유럽이 서독의 재군비를 유럽화 함으로써 서독으로부터의 재침략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유럽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시도이었던 것이다.

안전 보장면에서의 유럽통합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의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 initiative 은 ECSC를 무대로 계속되어, ECSC공동총회는 1954년 말 공동체의 기능의 강화와 공동시장의 확대의 연구에 착수하고 관세동맹과 원자력 이용에 관하여 유럽 통합을 전진시킬 것을 구상하였다. 벨지움의 Spaark의상을 의장으로 하는 전문위원회의 보고서(Spaark 보고)를 기초로 유럽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EEC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Euratom)이 1957년3월에 ECSC 가맹 6개국에 의하여 로마에서 서명되고 1958년 1월에 발효하였다. EEC는 「공동시장의 설정 및 가맹국의 경제정책의 상위를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공동체전체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확대, 증대하는 안전, 생활수준의 보다 빠른 향상, 그리고 가맹국간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행동으로서는 ① 가맹국간의 관세·수입제한의 철폐, ② 역외제국에 대한 공통관세·공통통상정책, ③ 가맹국간의 물건,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 ④ 공통농업정책, ⑤ 공통운수정책, ⑥ 경쟁정책, ⑦ 사회노동, 환경, 연구개발, 개발원조, 에너지 등, 의 영역에 있어서 가맹국간 협력을 열거하고 그 실시를 위하여 매 4년마다 3단계로 나누어진 12년의 과도기간(1969년 말까지)이 설정되고 동시에 각 단계에의 이행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방법이 조약 상 명기되었다. 특히 EEC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사법재판소의 4개의 주요기관으로 조직되어 기구 면에서 종래의 국제기관과는 명백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4기관은 각각 의회적 감독기관, 조정기관, 집행기관, 사법적 감독기관의 역할이 부여되고 그 가운데 의회적 감독기관(총회)과 집행기관(위원회)은 ECSC의 최고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제 조직법상 극히 주목해야할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Euratom은 「원자력산업의 신속한 수립과 육성에 필요한 여건을 창설함으로써 가맹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타국과의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임무로서 ① 연구개발과 정보의 교환, ② 보건 안전조치, ③ 투자와 공동기업, ④ 핵물질, ⑤ 연료의 공급, ⑥ 안전관리, ⑦ 특수융합물질의 소유권, ⑧ 핵 공동시장의 설정, ⑨ 원자력 이용을 위한 타국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이 조약상 규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은 다른 유럽제국(Sweden, Denmark, Norway, Swiss, Austria, Portugal) 과 함께 EEC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통합조직은 아니지만 상호간에서는 관세를 철폐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를 설정하지 않는 완만한 결합체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1960년 5월에 결성하였다.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무대로 하는 새로운 발전을 하는 지역 통합은 프랑스와 Benelux제국이 주도하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초국가적 통합을 지향하는 공동체방식과 영국이 주도하는 정부간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가는 자유무역지역지향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그러나 EEC의 순조로운 발전에 따라 1961년경부터 EFTA제국의 EEC 접근이 시작되었다. 1963년 1월에 체결된 프랑스·서독우호협력조약은 양국의 정치협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유럽정치동맹을 향해서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

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개조도 EFTA의 ECC접근의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는 EEC 가맹을 또한 중립계의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EEC와의 연합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Hallstein EEC위원장은, 1965년 관세동맹의 촉진, 농업 재정규칙의 제정, EEC재정의 독립, 이사회에 있어서의 특정다수결의 대폭채용, 유럽의회의 권한강화를 적극적으로 제창하게 되고 Hallstein위원장도 드골 대통령과의 대립의 표면화, 1965년 7월부터의 프랑스의 EEC보이콧으로 발전하였다. 이 대립의 배경은, EEC의 초국가주의와 EEC내의 대국주의라는 유럽통합을 둘러싼 노선문제였지만, 다음해 1월, 대단히 중요한 EEC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가맹국의 거부권을 수용하기로 한 「Luxembourg의 타협」에 의하여 EEC분열이라는 사태를 회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진전이라는 의미에서는 1960년대의 유럽은 착실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때 까지 3개의 공동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던 이사회와 위원회는 단일이사회 및 단일위원회 설립조약에 의하여 1967년 7월에 합병단일화 되어 1968년7월에는 예정보다 18개월이나 빨리 EC관세동맹이 달성되었다. 같은 해에 공통농업시장이 발족, 1980년대까지에는 경제통화동맹의 달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7년에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는 재차 EEC가맹을 신청하였고 프랑스에서는 드골 대통령의 퇴진(1969년)과 Pompidou(Georges)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사태는 진전, 동년 말의 EEC 수뇌회의는 영국 등의 가맹교섭에 합의하였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퇴진, Brandt(Willy) 서독수상의 등장, 영국에 있어서의 Heath(Edward)정권의 탄생은 유럽통합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의 제창에 의하여 1969년 12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EC 수뇌회의는 일방으로는 신규 가맹교섭의 개시를 합의함과 동시에 12년의 과도기간의 종료를 선언, 통합의 장래에 관하여는 1960년대를 통하여 EC가맹국을 분단하였던 정부간 주의에 일단의 결별을 고하고 유럽 통합을 초국가주의의 노선에 복귀시킨다는 야심적인 구상에 합의하였다⁸⁾. 구체적으로는 가맹국수뇌는 EEC조약 제 201조의 규정대로 공동체에 독자재원을 부여할 것, 12년 이내에 경제통화동맹을 향한 계획을 책정할 것, 유럽의회의 직접선거의 도입과 권한을 강화할 것, 그리하여 유럽 정치공동체설립에 관하여 1961년 11월 및 1962년 1월에 발표된 후배구상을 되살려서 가맹국외상에 대하여 「정치협력에서의 진전을 도모하는 최상의 방법을 1970년 7월말까지 보고하는」것을 요구하였다. 사실 1970년 10월에는 공동체 테두리 밖의 정부간 제도로서 유럽정치협력(EPC)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⁹⁾. 타방으로는 1970년 1월부터 EC 대외공통통상정책이 개시되었고, EC는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통상정책은 공동체 제도로서의 공통통상정책, 외교정책은 가맹국 정부간 제도로서의 EPC라는 2개의 제도적 틀 속에서 추구되고 수행되게 되었다.

EC의 확대는 1970년대의 유럽통합 과정을 특징 짓는다. 영국, Ireland, Denmark, Norway가 1972년 1월까지에 모든 가맹교섭을 완료, Norway를 제외한 3개국은 1973년 1월 1일 EC 가맹을 마쳤다. 1973년 10월에는 Pompidou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치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가맹국 외교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C 수뇌회의의 제도를 제안, 그 다음해 12월 수뇌레벨의 정치 협력체제로서 「유럽 이사회」가 설치되었다¹⁰⁾. 그러나 1974년 초에 유럽정국의 변화가 EC의 정치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 있어서는

8) 3rd General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ties, 1969, pp. 486-89.

9)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v. 1970, pp. 9-14

10)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12, 1974, pp. 6-13.

Heath 보수당 정권에 대신한 Wilson(Harold) 노동당 정권의 등장, 서독의 Brandt 수상에 대신한 Schmidt(Helmut) 정권의 탄생, 프랑스에서는 Pompidou 대통령 선거에 따른 Giscard d'Estang(Valery) 대통령의 등장이다. 노동당의 선거 공약대로 Wilson 영국 수상은 Heath 보수당 정권 하에서 체결된 EC 가맹조건의 재교섭과 영국의 EC 가맹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1975년 6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총수의 2/3가 영국의 EC 세력을 지지하여 영국의 EC 잔류가 확정되었다. 영국에 있어서의 노동정권의 탄생은 동시에 Giscard d'Estang 프랑스 대통령과 Schmidt 서독수상에 의한 Paris Bonn 추축의 부활을 초래하였다.

「유럽 경제통합화맹의 구체안은 1970년대 말까지 작성되지않으면 안된다」라고 한 1969년 12월의 Hague 수뇌회의의 합의를 받고서, Jenkins(Roy) EC 위원장은 1977년에 유럽 통화제도(EMS)를 제안, 동제도는 1978년 12월 프랑스와 서독의 주도 하에서 발족하였다¹¹⁾. EMS는 유럽통화권을 창설하여 유럽통화의 안정을 도모할 것, EC 지역내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맹국 경제정책의 수렴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동제도는 가맹국 통화에 각각의 평가를 부쳐서 표준치를 산정하는 Basket 방식의 유럽통화단위(ECU)를 창설하여, EC 내에서는 일정한 폭을 갖는 고정환율제, 대외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취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금융시장 개입과 신용공여의 경우 표시단위로서 또한 준비자산 및 중앙은행간의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장래에 관해서는 1975년 12월 외교정책, 안전보장정책, 대외경제정책, 개발원조 등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통일행동을 취하는 유럽연합의 건설과 EC로서의 단일의사결정센터의 창설을 추구한 「진데만 보고」의 공표¹²⁾, 1983년 6월 Stuttgart 유럽 이사회에 의한 「EC 가맹국간의 협력 강화·발전에 관한 선언(Stuttgart 엄숙선언; 장엄선언)¹³⁾, 1984년 2월의 유럽의회에 의한 유럽연합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스피네리 제안)¹⁴⁾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스피네리 제안은 유럽통합의 전진을 향하여 기존의 조약을 기초로 한 쇄신과 확대, 제기관의 보다 더한 민주화, 효율화, 책임의 명확화를 추구한 연방주의적 조약개정 초안이었다.

현실적으로 영국의 EC 가맹에 대표되는 EC 확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통합의 정열을 냉각시켰으며, 1979년 5월에 탄생한 Thatcher(Margaret Hilda) 정권은 유럽통합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유럽통합을 거론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1979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유럽의회의 직접선거라고 하겠다. 1979년 6월 처음으로 참가한 유럽 이사회에서 Thatcher 수상은 영국의 분담금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영국문제」는 1984년 6월의 Fontaine-bleau 유럽 이사회에서 해결될 때까지 EC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동시에 Thatcher 영국 수상은 1960년대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EC의 초국가주의 혹은 영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어떠한 연방주의적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981년 1월 Greece가 10번째로 EC 가맹국이 되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가맹국간의 대립에 의하여 유럽 통합은 1980년대의 전반 쇠퇴기를 맞았다. 그러나 스피네리 제안에서 보여진 유럽의회의의 활동, 유럽경제를 둘러싼 국제환경

11)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12, 1978, pp. 10-14.

12)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12, 19705 pp. 5-7.

13)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6, 1983, pp. 24-29.

14) Doc. 1-1200/83, Debat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14 February 1984, pp. 26-28, 92-94.

의 변화, 특히 Euro 비관주의의 대두, 1985년 1월에 Mitterrand(Francois Maurice) 프랑스 사회당 정권의 재무장관이었던 Delors(Jacques Lucien Jean)이 EC 위원장에 취임함에 때 맞추어 유럽 통합과정은 1980년 후반에 들어서서 새로운 전개를 보게 되었다. 유럽통합이라는 대목표 보다도 자기 나라의 사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향적인 태도로 시종하던 가맹국들도 「서구사회는 이대로는 미국·일본과의 경쟁에 패배하여 사양의 길로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EC의 재활성화가 유럽정치의 초점으로 되었다. 1985년 6월 Delors 위원장 밑에서 EC 위원회가 발표한 「영역 내 시장백서」는 EEC 조약이 지향하는 물건, 사람, 서비스, 자본이라는 관세를 초월하는 분야에서의 영역내 시장의 완전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 현존하는 가맹국간의 장벽을 물리적 장벽, 기술적 장벽, 세제상의 장벽 등 3 분야로 분류하고 전체로 282 항목의 EC 입법을 199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제안하였다¹⁵⁾. 더욱이 영역 내 시장통합을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EC 입법절차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EC 제도개혁도 정치과제로 되었다. 이리하여 경제와 제도개혁이 결합하는 형태로서 1985년 6월의 Milano 유럽이사회와 EC 설립조약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의 개최를 결정¹⁶⁾, 가맹 9개국은 1986년 2월 단일 유럽의정서(SEA)를 채택하고 동 의정서는 그 다음해 7월에 발효하였다.

단일 유럽의정서는 EC의 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즉, 동 의정서는 각료 이사회에 있어서의 결정절차를 개정, 특정 다수결 방식이 적용되는 대상조문을 확대하고 또한 유럽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료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의한 공동 결정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영역 내 시장통합의 완성을 위한 계획과 그 달성 연도를 명기하였다. 특히 공동체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어 온 유럽정치협력(EPC)과 유럽통화제도(EMS)를 조문화하고 유럽통합의 사회적 측면의 일환으로서 EC 사회 노동입법 절차에 있어서 노사대화를 제도화하였다. 물론 유럽통합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서 유럽통합이라는 목적은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 수단은 여전히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속 되었다.

영역 내 시장통합 계획이 만들어 낸 유럽의 경제적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경제통화통합의 필요성을 높여서 1989년 6월의 특별 유럽이사회는 경제통화동맹(EMU)과 정치통합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개최를 결정하였다¹⁷⁾. 더욱이 1990년 4월의 Dublin 유럽이사회에서 정치동맹에 관해서도 정부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¹⁸⁾, 2개의 정부간 회의는 1990년 12월, Rome에서 가맹 12국간에서 개시되었다. EMU와 정치통합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 있어서는 교섭은 원칙적으로는 조기에 합의에 도달되어 있었으나 각론에서는 곤란하게 되어, 영국은 단일통화의 도입시기의 설정에 반대하고 또한 독일도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가맹국의 금융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에 대하여 유보하게 되었다. 정치동맹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 있어서 의논의 초점은 소위 「민주주의의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혁, 시민의 입장에서 유럽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시민권 개입의 도입, 유럽 정치협력의 공동외교안보장정책에의 발전, 그리하여 EC의 연방화를 조약상 위임하는데 있었다. 이리하여 1년에 미치는 2개의 정부간 회의에서의 교섭을 거쳐서 1992년 2월 Maastricht(Netherlands)에서 유럽연합조약이 가맹 12개국의 타협의 산물로서 서명되었다.

15)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6, 1985, pp. 18-21.

16) *ibid.*, pp. 13-17.

17)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6, 1989, pp. 8-17.

18)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4, 1990, pp. 7-11.

1993년 11월에 발효한 유럽연합조약(Maastricht 조약)은 과거 40년에 걸친 유럽 공동체를 축으로 한 유럽통합 과정을 새로운 단계로 옮겨 놓았다. 경제통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통화동맹에로의 과정이 설정되고 경제통합은 최종단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즉 1990년 7월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던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환율 메커니즘(ERM)에의 참가를 골자로 하는 EMU의 제 1단계에 이어서 1994년 1월부터는 제 2단계를 출발시켜서 유럽 중앙은행의 전신으로서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고 가맹국들로부터 통화정책의 조정을 시행하여 늦어도 1991년 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하여 참가기준을 충족한 가맹국에서 통화통합을 실현할 것을 조문화하였다. 그러나 통화주권 유지를 고집한 영국과 헌법상의 제약을 받고 있던 Denmark에 대해서는 EMU 제 3단계에의 참가를 참가기준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양국의 독자판단에 위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타방으로 정치통합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화와 효율화와 기관적 구조의 단일화에 의한 제도개혁은 일정한 전진을 실현하였지만 유럽 시민권에 관해서는 가맹국 거주민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영역 밖 국가들에 있어서의 다른 가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받는 권리이외의 커다란 진전은 볼 수가 없었다.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과 사법내부협력은 조약상 정부간 협력으로서 경제통합과는 틀리는 법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즉 3개의 유럽 공동체를 기초로 유럽 공동체 그리고 정부간 제도로서의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과 사법내부협력이라는 3개의 근간으로 구성되는 유럽연합(EU)의 탄생을 보게된 것이다.

그러나 Maastricht 조약의 교섭과정 및 가맹국내의 비준과정에서 표면화 된 EU에 대한 불신과 회의심은 Delors 위원장 밑에서 유럽통합에 지도력을 발휘하여 온 유럽위원회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이리하여 「공동체가 조문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단위로서 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공동체가 행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만을 공동체가 행한다」라는 보완성 원칙이 Maastricht 조약 이후의 EU의 활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다협이 산물로서의 Maastricht 조약은 유럽이 장래 직면하게 될 과제에 대응하는 제도적수단을 유럽연합에 제공하기 위한 조약개정에 관한 정부간 교섭의 1996년 개최를 조약상 규정하고 있었다.

1995년 12월의 Madrid 유럽이사회회의 결정을 거쳐서 1996년 3월 29일부터 유럽연합 조약(Maastricht 조약) 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Torino에서 개시되었다¹⁹⁾. Madrid 유럽이사회에서는 EU 확대를 유럽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치적 요망」으로 하여 중 및 동유럽 10개국과 Malta 및 Kipros의 합계 12개국과의 사이에서 각각의 정치·경제 개혁의 진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개시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였다. 따라서 장래 예정되었던 EU 확대는 EU에 있어서 커다란 기대와 동시에 중요한 정치과제로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도 EC의 제도개혁과 계획대로 유럽통화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EU의 장래를 위해서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1997년 6월 17일 가맹 15개국 수뇌들은 15개월 가까이 미치는 Maastricht 조약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의 결과 신유럽연합조약(Amsterdam 조약)안에 합의하고, 이 조약은 같은 해 10월 EU 가맹 15개국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Amsterdam 조약의 목적은 ①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신체의 위협 없이 생활할 수 있

19)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4, 1996, pp. 9-14.

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창조, ② 시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제공, ③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의 실시, ④ 장래의 확대를 겨냥한 EU의 제도적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 그리하여 ⑤ 보다 긴밀한 협력·유연성의 원리의 제도화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3년 11월 이후 EU의 활동의 기초로 되어 있는 「3중점」을 보강하여 보다 강화할 것 등이다. Amsterdam 조약에 있어서의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자유·안전·정의의 확보

① EU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기본적 자유의 존중, 법의 지배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규정. ② 성, 인종, 종교, 신념, 장애, 연령, 성적성향에 근거하는 차별에 대하여 EU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③ 가맹국에 있어서 중대하게 지속적으로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을 경우 EU에서 행동을 취할 것을 가능하게 할 것. ④ 남녀차별의 철폐를 EU의 목적으로 할 것. 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도입. ⑥ 사람의 자유이동, 망명, 이민을 「제 1 중점」 즉, 공동체 사항으로 할 것. ⑦ 이사회는 신조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가) 사람의 자유이동, (나) 영역 내 국경 규제의 철폐, (다) 망명, 난민, 이민, 제 3 국민 거주자의 권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할 것. ⑧ 국경규제 철폐에 관한 Schengen Agreement와 그 제도를 그대로 의정서라는 형태로 유럽의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것.

(2) European Union과 시민

① 고용에 관한 장이 처음으로 조약에 신설되어 고용촉진이 EU의 목적으로 되고, 영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사회노동의정서의 조약에로의 편입을 실현. ② 「지속적 발전」을 EU의 목적으로 하여 공동체 정책의 설정과 그 실행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건강보호, 소비자 보호를 요청, 강조. ③ EU의 여러 기관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위원회의 자료에의 시민의 참여권을 확립.

(3)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

①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에 있어서 특정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많아지는 여지가 부여되고, 가맹국의 「건설적기권」(참가하지는 않지만 EU로서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 ② 이사회 사무국장이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의 고급대표의 임무를 맡고서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에 관하여 이사회와 의장국을 보좌할 것. ③ 이사회 사무국에 조기경계부국이 설치되어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을 준비, 강화. ④ 대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가맹국, EU 산업, 노동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위함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 된 경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공동체에 대해서 서비스 무역과 지적 소유권에 행하는 대외교섭과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것,

(4) 제도기구 개혁

장래의 EU 확대를 목적으로 EU 기구에 있어서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혁, 동시에 EU 제기관이 보다 명확한 형태로서 민주적이고 더욱 강력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존재로 되는 것을 지향할 것을 규정

① 유럽의회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나란히 존재하는 입법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즉, 종래의 「협력절차」, EMU 관련 4개 조문을 제외하고, 「공동결정절차」로 대신되어져서, 공동결정 절차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공동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더욱이 유럽의회의 위원총수의 상한을 700으로 하고 유럽의회의 선거절차에 대하여는 유럽의회에 입법 제안권이 부여되어서 유럽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종래의 유럽의회의 자문에 대신하여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이사회

특정다수결의 적용범위의 확대는 현행 조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관련 3개조문, 원자재 수입에 관련된 보상, 설립권이 대상으로 되었고, 신규조문에 관하여는 특정다수결이 고용, 사회적 배제, 평등, 공중위생, 투명성, 부정행위, 통계, 해외 영토지역, 세관협력의 분야에 적용.

③ 유럽 위원회

의정서에 의하여 신규 가맹국이 6개국을 넘어선 단계에서 현재 2 사람의 위원의 제공이 인정되어 있는 가맹국이 2 사람 중 1 사람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이사회에 있어서의 투표의 가중치를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럽위원회 위원장에 위원의 선임과 정책 수행에 있어서 여태까지 이상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유럽위원회의 내부 조직과 부·국의 구성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⑥ 기타

회계 감사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위원회에 여태까지 이상의 행정적 자치를 부여하였다.

(5) 긴밀한 협력과 유연성 원리

① 새로이 「유연」조항을 도입하여 이것에 의하여 모든 가맹국에 의한 전진이 불가능한 경우, 복수의 가맹국이 약간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 EU의 테두리 내에서 선행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하게 되었다.

② 「긴밀화 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의 긴밀화의 실시를 위한 상세한 조문은 엄밀한 원칙과 조건 하에서 필요에 응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원칙과 조건이란 협력을 위한 명확한 구조의 구축으로서 그 경우에 조약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 처음부터 협력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가맹국의 이익을 지키도록 요청되었다.

3. 유럽통합기구의 제도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

유럽통합과 최초의 10년 간은 다소의 분쟁이 존재하였다. 즉 초기의 유럽기구는 정부간 협력의 전통적인 제도형태를 모델로 할 것인가, 혹은 보다 야심적인 연방국가의 특징을 갖는 형태를 취할 것인가, 그리하여 어느 형태를 취한다면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었다. 그러나 그 분쟁은 현재로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달성되리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자극되어서 실제적인 활동분야에 따른 특징의 제도가 창출되고 그것이 실제상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그의 타당성에 관해서 본래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노정되었다.

유럽경제협력기구(OEEC)²⁰가 유럽 부흥계획(Marshall Plan)을 협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시사를 받아 들여서 1948년에 설립되었지만 그것은 정부간 협력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조직화되었던 것이다.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가맹국 정부의 대표로서 구성되고, 의결은 그들의 상호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더욱이 어느 이사국이 해당결의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기권한 경우에는 의결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만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는 제한 조항이 부가되어있다. 만장일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무역자유화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공통이익은 대단하여, 상품, 서비스 및 지불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양적 제한 기타의 장애의 감축 및 폐지에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전후 최초의 10년 간에 이와 같이 달성된 가맹국경제의 통합의 정도는 유럽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시장의 그 후의 설립에 대하여 내놓을 수 없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다. 정부대표로 이루어지는 이사회와 협의회에 의결권 등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제도양식은 그 후 가맹국이 공통관심사에 관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재량을 유보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유럽기구에 인계되었다²¹).

유럽통합은 정부간 결의가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고 정부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존하는 한에서는 더한층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지금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결의의 결과는 국가이익간의 타협의 최소공통분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평가가 유럽경제협력기구의 활동에 의하여 달성된 경제통합의 성과에 비추어서 정당화되었는지 아닌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통합추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결의방법을 구비하는 유럽기구들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제도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추구되었다. 즉 본국 정부에 지시를 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공동이익을 위하여 단독으로 행동하는 책임이 지워진 고도의 자격을 가진 독립의 개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소위 「초국가」(supernational) 기관에 특정의 결의권능이 부여되었고, 그리하여 통합과정의 방해가 되는 어떤 국가의 거부권도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간 기관의 의결절차에 있어서 다수결제의 채용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유럽공동체에 있어서는 이들 2개의 방법이 함께 채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이전의

20)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196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개조.

21) 예를 들면, 서유럽연합(1948년)(West European Union), 유럽심의회(1949년)(Council of European), 교통부장관유럽협의회(1953년)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유럽핵연구기구(1953년)(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유럽민간항공협회의(1955년)(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베네룩스경제연합(1958년)(Benelux Economic Union), 유럽자유무역연합(1960년)(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우주기관(1975년)(European Space Agency).

보다 전문화되어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에 있어서는 의결권능은 초국가적인 위원회(Commission)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그 결의는 어느 특정의 경우에만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Council)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후일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있어서는 그것은 경제 문제에 관하여 광범한 권한을 갖지만, 그의 입법과 정책결정의 성격을 갖는 의결은 초국가적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정부대표기관인 각료이사회가 최종권한을 일반적으로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접근방법의 상위는 민주적 자반을 갖지 않는 초국가적 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서서히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서는 설명될 수가 없고 오히려 양공동체를 설립한 조약의 개념상의 상위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즉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은 위원회가 석탄 및 철강산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채택할 정책에 관하여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없다면 그 정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은 가맹국간에 공동시장을 설립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채택해야할 경제정책에 관하여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규정하고, 이사회가 그의 정책을 확정하고 적용할 때는 광범한 정치적 재량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경제공동체에 있어서는 최종결정권은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에 남겨져 있었다. 더욱이 거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초국가적인 위원회가 먼저 제안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고, 그 제안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는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제안권을 이와 같이 실질상 독점함으로써 이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유럽적인」 정책이 형성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공동체각료이사회에 다수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교묘한 억제균형의 장치가 고안되었다. 이사회에 있어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인정함에 따라서 하나내지 그 이상의 국가의 중요한 국가이익이 다른 국가들의 다수결연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대표로부터 표명되었지만 그 우려는 두 개의 보장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극복되었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인정될 경우, 거기에서 요구되는 다수는 2개의 방법으로 조건이 부쳐진다. 제 1은 가중투표제의 도입이다. 즉 대중소의 가맹국간에 있어서 각각의 투표수는 차이를 둔다. 그리하여 대국이 연합하여 소국을 다수결로서 배제하거나 역으로 소국이 연합하여 대국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어떠한 대국도 단독으로 결의의 성립을 저해하는데 충분한 표수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제2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제안의 실질을 수정하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²²⁾.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초국가적 위원회는 전적으로 공동이익에 관하여 그의 제안을 제출할 의무를 조약상 지고있고 그것에 의하여 다수파가 그의 국가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수파를 전혀 무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들 보장조치는 유럽공동체가맹국이 극히 많은 종류의 결의에 대하여 다수결원리를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 적용은 공동체의 관행에 있어서는 극히 드문 예로 머물고 있다. 이것은 이사회가 많은 경우에 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할 것을 바라지만, 만장일치의 투표에 의해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결과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욱이 다수결에 의한 결의가 유럽경제공동체조약하에서는 가능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불구하고, 어떤 정부에 의하여 자국으로서는 중대한 관심사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의 결의에 도달하기까지 이사회에서 토의되는 것

22) 이사회의 거의 모든 실질적인 결의는 위원회의 제안을 필요로 한다.

과 가맹국정부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²³⁾. 이와 같이 다수결제도는 유럽공동체에 있어서는 예상되고 있던 것보다는 대단히 적은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고, 가일층의 광범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반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뚜렷한 반응을 얻을 수가 없었다. 커다란 국가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다수결제도에 대하여 신중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다.

초국가적 조직으로서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되어왔던 유럽공동체(EC)의 다른 제도적요소는 그의 제기관의 결의가 집행되는 방법이다. 공동체제기관의 입법 및 행정행위는 가맹국의 관계관청의 개재를 필요로 하지않고 가맹국에 있어서 바로 효력을 발생시켜 직접으로 집행될 수 있었다. 그 통일적인 적용과 집행은 초국가위원회에 의하여 제어되고 국내재판소 및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 결과로서 통일된 직접 적용되는 유럽법의 체계가 창출되었다. 이 유럽법은 가맹국정부의 관계기관에 의하여 대응하는 입법 및 집행에 그 이행을 의존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유럽조약과 협정보다도 더한층 강하게 그의 평등과 효과적인 적용을 보증하였다. 유럽공동체에 있어서의 경험은 초국가적구조가 합의된 정책의 이행 및 집행의 단계에서 특히 그의 본래적인 가치를 증명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제도적 통합의 또 하나의 방법은 진정한 유럽의회를 탐구하는 유럽운동에 호응하기 위한 타협적 해결로서 자문적인 의회를 창설함으로써 추구되었다. 유럽심의회가 1949년에 창설될 때 자문적의회가 병설되었다. 이 의회는 동시에 각각의 가맹국가의 의회의 의원일 필요는 없지만, 통상으로는 그러한 의원들로서 구성되었다. 이 의회는 순수한 자문기관으로서 진정한 의회가 당연히 가지는 입법 및 예산권한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토의하고 심의회에 권고하는 권한만을 갖는다. 이와 같은 자문적 의회는 1954년에 서유럽연합(West European Union)에, 그리하여 1955년 Benelux 경제연합(Benelux Economic Union)에도 설치되었다. 유럽공동체의 창설에 즈음하여도 주로 자문적 기능을 갖는 동일한 의회가 설치되었다. 그 의원은 가맹국의회에 의하여 그 국가의 의원 중에서 선발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에는 공동체의 가맹국의 시민에 의하여 직접 선발되게 되었다. 1962년 이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 유럽공동체의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한을 갖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예산절차상 어느 한정된 권한을 취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진정한 입법권한을 갖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들 의회는 유력한 가맹국의원으로서 구성되게 되면 각각의 조직의 정책결정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책결정에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의회의 대표자들이 국가 단체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피하고 당의 정책에 근거하여 「초국가적」집단을 조직하는 관행이 「유럽」적 관점을 창출하여 공통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고 좁은 국가이익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같은 의회의 방침이 통합과정에 있어서 추구되어 장래 입법 기타의 의회의 진정한 권한이 이들 의회에 부여될는지 어떨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것은 더욱이 이들의 의회에 있어서 국가 대표들이 나타낸 「초국가적」태도가, 유럽의 이익과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견지될 것인지 어떨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가맹국정부 및 그의 의회는, 유럽의 의회제도에 그들의 권한의 일

23) LuxemBourg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January 28, 1966, Bulletin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66, No. 3, p. 8.

부를 부여하는데 과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서유럽의 모든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는 어느 미묘한 분야, 예를 들면 섬유를 제외하고, 유럽무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양적 제한의 폐지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유럽경제협력기구의 가맹국은 특히 관세의 폐지면에서 가일층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수단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6개 가맹국(벨지움, 프랑스, 서독, 이태리,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는 한편으로는 석탄 및 철강산업에 대하여는 초국가적 체제의 수립에 성공하고 유럽의 경제적 결합을 초국가제도와 긴밀하게 통합하는데 찬성하고 있었지만, 유럽경제협력기구의 다른 가맹국은 관세동맹 혹은 자유무역지역이상의 통합에는 적극적이지 아니었다. 이 합의의 결여는 유럽통합 과정에 결정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로 되었다 즉 1957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6개국이 유럽 경제공동체(ECC)를 설립하고 그 이후 통합에의 별개의 길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유럽의 경제적 분열을 방지하고 유럽 경제공동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포괄적인 유럽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함으로써 분열의 영향을 완화시켜 보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유럽경제공동체의 외곽에 남겨진 유럽경제기구 7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스위스, 및 영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1960)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초국가적 요소를 갖지 않고 그 가맹국간에서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 기타의 무역장해를 서서히 폐지하는데 그 주된 활동을 한정하는 것이었다.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자유무역연합의 가맹국사이에서 자유무역을 조정하는 교섭의 노력은 재차 실패하였다.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 및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맹하였다. 동시에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자유무역연합내에서 공업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서서히 폐지함과 병행하여 이들의 관세를 상호간에 폐지할 것을 협력협정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잔존 가맹국과의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적어도 대부분의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전 유럽중에 자유무역지역이 달성되었다. 유럽공동체는 더욱 확대되고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맹), 남은 서유럽 여러 국가와의 협력협정에 의하여 유럽경제통합에 있어서 유럽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9개의 서유럽국가(Austria, Cyprus, Finland, Iceland, Liechtenstein, Malta, Norway, Sweden, 및 Swiss)가 공동체의 외곽에 남아있지만 특히 이들 국가들은 공동체와 같은 고도로 통합화된 초국가적 조직에 전면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그들의 독립과 중립정책의 추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공업 및 농업제품 및 기타의 상업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산업, 노동 및 다른 직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공통시장을 가맹국간에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농업시장의 조직, 산업집중의 제어, 보조금의 교부 및 제 3국과의 무역에 관하여 공통정책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경제적 통합은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유럽경제공동체는 그의 국내정치로 인하여 상이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 가맹국간의 공동경제, 통화정책 결여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에 아직 직면하고 있다. 가맹국간의 경제, 통화통합의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여러가지 시도는 아직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농업제품의 가맹국간 무역에 균등한 세금을 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국간의 변동환율이 공동시장내에 새로운 인공적인 장벽을 구축하게 되었다. 가맹국들 중에 대부분의 가맹국에 시행되고 있었던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1979)는 상이한 국가통화정책의 비통합적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을 교정하는데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유럽공동체의 제도의 능력을 초월한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통합방위군의 개념은 서유럽방위를 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내에서 발전하여왔다. 이 명확한 이유 때문에 군사적 통합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인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한정되고 있었다.

통합과정은 1950년 9월 26일의 북대서양조약이사회(North Atlantic Treaty Council)의 결의에 발단되었다. 그것에 의하여 가맹국정부는 서유럽에 있어서의 통합군의 설립에 합의 하였다. 이 통합군은 가맹국정부가 이 목적을 위하여 배치되는 가맹국의 병력에 의하여 구성되고, 통합군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적 참모에 보조되는 최고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간다. 이 통합지휘구조는 동일한 통합참모를 동반하는 지역지휘관의 임명과 중앙 및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사령부의 설치에 의하여 확대되었다. 군사계획은 각 가맹국의 참모장으로 구성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위원회(Nato Military Committee)의 지휘 하에서 통합화된 수준에서 행하여졌다. 통합방위군에 배치된 군대는 평시에는 각 가맹국의 지휘 및 규율 하에 있었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연습기간만 각 가맹국의 군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사령관하에서 통합군에 편성되게된다.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를 설립하는 조약이 1952년에 조인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6개원가맹국의 병력을 공동 초국가 군사행정 하에 보다 긴밀하게 통할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이 조약은 프랑스의회가 프랑스군의 초국가화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비준되지 못했다.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맹국의 전 병력은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통합군사조직으로부터 1966년에 철회한 이래 프랑스군을 제외하고 통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군에 배치되던가 혹은 그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내의 군사적 통합의 다른 면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맹하는 유럽제국에 비행장, 통신, 파이프라인, 레이더 기타의 공동부대지원시설계획의 책정에 나타난다. 부대지원시설조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획되고 자금제공 되지만 그것은 국가적선에서 집행되고 유지된다. 공동방위무기 및 장비의 표준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의 방위조직체의 모든 통합은 가맹국정부대표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이사회와 그 하부위원회의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가맹국의 공동방위이익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일찍이, 1949년에 유럽심의회회의 자문의회(Consultative Assembly)는, 동심의회가 유럽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광범한 정치적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었다. 1949년 9월6일의 결의(Resolution of September 6, 1949)에 있어서 동 의회는 「유럽심의회회의 목적 내지 목표는 기능적으로는 한정되지만 실력을 갖는 유럽정치권력기관의 창설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심의회는 심의회규정(Statute of the Council)을 이 방향으로 대폭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에 관하여 각국 정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회는 장래의 유럽연방 또는 연합구조의 기초로서의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의 조약안을 기초토록 가맹국 정부로부터 요청 받았다. 유럽정치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의회(Ad hoc Assembly for the European Political Community)에 의하여 다루어진 조약안은, 초국가적인 유럽집행이사회(European Executive Council)를 갖는 석탄철강공동체의 제도개념을 모델로 하는 조직을 상상한 것이었다. 이 유럽집행이사회는 일반투표에 의하여 직접선거되는 제1원과 국가의회로부터 파견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가를 대표하는 제2원으로 구성되는 2원제의 유럽의회회의 통제

하에 있다. 유럽정치공동체의 기능은 외교, 방위 및 공동시장의 설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었으나, 유럽의회의 입법 의결에 의한 개별권한의 특별위양은 국가각료이사회(Council of National Ministers)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1954년 프랑스의회에 의한 유럽 방위공동체 조약의 거부에 따라서 유럽정치공동체규정안(the draft state of the European Political Community)은 그 이상 심의되는 일은 없었다.

1961년 7월 18일 유럽 공동체 가맹 6개국의 정부의 장은 그의 외교정책을 일치시킬 것, 그리하여 특히 유럽의 정치적 일체화를 위한 공통개념에 도달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외무부 관리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원회는 「유럽국가연합」(Union of European States)을 창설하기 위한 소위 Fouchet Plan²⁴⁾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유럽 정치공동체 설립 특별위원회의 초안과는 개념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방위 및 외교관계에 관한 공동정책결정의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요하지만 기권은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기권한 가맹국은 결정에 좇을 의무가 면제된다. 입법의 회도 제안 되어 졌지만, 그것은 토의기관에 불과하였다. Fouchet Plan은 유럽공동체 의회로부터 기존의 공동체에 비교한다면 후퇴되고 있다고 심하게 비판되고 Belgium과 Netherland의 정부로부터도 비판되어서 그 이상 검토되지 않았다.

실제 시행에 즈음하여 외교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최초의 결과는 유럽 공동체 가맹국에 의하여 1970년이래 실행된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제도이다. 그것은 정식 조약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가맹국 정부의 장 및 외무장관 사이에 합의된 결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외무장관들의 정기회합과 고위관리, 대사 및 국제조직에 파견된 대표들 선에서의 계속적인 조정, 그리하여 가능하고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교정책 문제에 관하여 공통의 입장을 채용하기 위한 회의를 갖추고 있었다. 각 국 정부는 외국 정부와 상담하기 전에 공통 관심사에 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다. 1972년 12월 10일 가맹국 정부의 장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로서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이사회는 그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유럽 공동체 이사회로서, 또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유럽 정치협력의 기관으로서 이 2개 영역의 권한 사이에서 최대한의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에 활동하였다. 최고 조정기관으로서의 가맹국 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 설치의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정책결정에서의 초국가적 요소의 가일층의 약체화를 특정 지우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서의 유럽 여러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연합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유럽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강한 동인이었다. 그러나 어느 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현저한 진전을 보였으며 그러한 유럽제국연합을 위한 적당하고 정치적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구조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사항이기도 하다. 회고컨대 만약 통합이 정책 결정 선에서 달성된다면 연방 혹은 초국가적 구조는 어느 쪽도 용이하게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는 것은 경험이 나타내고 있는 바대로 라고 생각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통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가맹국 정부의 일치를 필요로 하는 연합구조가 가맹국 정부가 그의 국민의 복지에 주로 책임을 진다고 생각되는 한 오히려 쉽게 수용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합의된 정책의 평등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이 필요하게 되는 정책 결정선 이하에 있어서는 연방 내지는 초국가적 형태의 제도가 보다 유용한 것으로 채용될 것이다.

24) Fouchet Plan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4. 결론

현대 국제정치에는 2개의 커다란 조류가 있다. 하나는 원심적, 분열적, 불안정화의 흐름이다. 유전자처럼 존재하는 민족, 국가, 종교, 이데올로기에 관한 자기 중심주의가 투쟁, 혼란,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소련방의 붕괴, 구 유고슬라비아, 중앙 아시아 등에서 볼 수 있는 민족분쟁, 더욱이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회교 원리주의 운동의 대두가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구심적, 통합적, 안정화에의 흐름이다. 유럽은 이 흐름에 힘입어 통합에의 웅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²⁵⁾이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²⁶⁾ 동남 아시아제국연합 (ASEAN) 자유무역지역(AFTA)²⁷⁾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적 구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 세계는 이 2개의 조류가 만들어내는 여울에 빨려들어 진행방향을 잃어버린 채 진로를 모색하며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구심적 통합화는 점점 강화되어 갈 것이다. 현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는 기존의 주권국가들의 테두리 내에서 조정될 수가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구환경의 악화는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국경 없는 성질을 갖는 본격적인 국제화인 것이다. 지구환경의 보호는 주권에 집착하는 국가들간의 협력에 의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점점 더 국경을 초월하게 되는 이상 그 해결도 국경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환경의 이 이상의 악화는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야 인류는 국가 주권의 테두리로부터 탈출하여 전 인류적인 시각에 서서 인류가 맞고 있는 전 지구적인 제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 주권을 조정하는 세계의 통합화는 필연적인 흐름이다²⁸⁾. 유럽통합은 인류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초의 시금석이라 하겠다.

25)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이 상호시장을 개방하여 만든 자유무역권. 관세의 대폭인하와 철폐가 목적. 발효로 인구 3억6천, 국내총생산(GDP) 6조7천억불이라는 EC를 상회하는 경제권이 등장한다. EC와 같은 공통관세는 갖지 않고 EC보다 완만한 지역경제권의 성격을 띠게 된다.

26) 환태평양지역의 다국간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의 Canberra에서, 제 1회 회의를 개최. 외상, 경제담당상등에 의한 각료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고위사무급회담을 적의하게 개최. 제 4회 회합(1992년 9월 방콕)에서 상설의 APEC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참가국은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ASEAN 6개국(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27) 제 4회 ASEAN 수뇌회의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구미의 경제 bloc화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하여 15년 이내에 ASEAN 자유무역지역(AFTA)를 창설할 것 등을 중점으로 하는 싱가포르 선언에 조인하였다. 또한 AFTA 창설을 위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공통효과 특혜관세(CEPT)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8) 통합은 구심적 작용임으로 구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되어, 외집단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배타적인 bloc을 형성하게 되지만, 그것은 외집단과의 이해대립을 깊게 하여, 세계통합과는 역방향의 세계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가일층의 통합을 지향하는, 영역외로 개방된 지역통합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田畑茂二郎, 國際法講義(上)(新版) (有信堂, 1984)
 田畑茂二郎, 國際法講義(下)(新版) (有信堂, 1985)
 田畑良一, 國際法 III (新版) (有斐閣, 1973)
 宮崎繁樹, 國際法綱要 (成文堂, 1984)
 共同通信社, 世界年鑑 (1993版) (共同通信社, 1993)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6. 198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7. 1890.
 E. B. Haas, The Uniting of European :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8.
 W. Hallstein, United Europe, Challenge and Opportunity, 1963.
 P. Pescatore, Le droit de l'integration, 1972.
 C. Pentland,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1973.
 A. H. Robetson, European Institions, Cooperation, Integration, Unification, 3rd ed, 1973.
 J. A. Caporso,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uropean Intergration, 1974.
 P. Maillot, La Construction eurppeenue, 1975
 U. Everling, Possibilities and Limits of European Integra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18. 1980.